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2. 12. 9.(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2. 11. 15.
- 회부일 : 2022. 11. 18. (의안번호 : 22 - 138)

2.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복장 및 제복 개정(안 제12조제3항)
 -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등 변경
-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24조)
 -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과 중복되어 삭제(제9항)
 -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제13항)
- 기타 관계 법령 폐지 및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4.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3항)에 복장 및 제복 개정에 따른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등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24조)에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하는 내용임.
 -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과 중복되어 (제9항)을 삭제
 - (제13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 기타 관계 법령 폐지 및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직원 장기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세분한 것에 대해 휴가를 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